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대한의사협회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 대의협 제0625-07171호(2026.9.17.)

2.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처방·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처방약 분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처방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 처방하는 경우, 종전 처방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의 추가·중복 처방을 일률적으로 제한·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중복 처방해야 할 경우,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여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처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 결정의 근거와 사유를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으로 인한 의존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사용 주의가 필요하므로 품목 허가사항,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무관	이지은	사무관	박선임	마약정책과장	전결 2026. 10. 15. 문은희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7161 (2026. 10. 1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3 팩스번호 043-719-2800 / dalta@korea.kr / 비공개(5)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